

본 지침은 방역당국 지침 및 유치·중등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라며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방역당국의 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지침은 방역당국의 각종 지침을 대학 현장에 맞게 해설한 것으로, 방역당국의 지침이 개정되는 등의 사유로 방역당국 최신 지침과 동 안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최신 지침을 우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2023.9.3.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 (제9-1판)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적용·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

교 육 부

##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제9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제2급감염병'에 해당
소독·환기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소독·환기를 실시하고 감염 위험요인 관리 (「코로나19 대응 집단·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에 따름)
확진자 발생시	<input type="checkbox"/> (대학)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외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판과 동일하게 적용	

# 목 차

I. 대응 기본방향	1
II. 대학 일상 관리	1
1. 학내 환경 관리	1
2. 학내 시설별·상황별 관리	1
III. 상황 발생 시 관리	2
1. 유증상자 발생 시	2
2. 확진자 발생 시	3
참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4

## I 대응 기본방향

- 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등급을 조정(2급→4급)하고 방역 체계를 완화(23.8.31.)함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관련 내용 수정 반영 적용  
※ 방역당국의 지침을 기본 적용하면서 현 상황에 맞게 대학 방역지침 완화

## II 대학 일상 관리

### 1 학내 환경 관리(공통)

- (환기) 환자 발생 장소, 다수 밀집 장소 등에 대한 환기\*는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준수  
\* 질병관리청 누리집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 참고
- (방역물품) 감염병 위기 단계·상황을 고려하여 대학 내 시설에 최소 기준 수량\* 이상의 방역물품을 비치  
\*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시 수준 비축·유지

### 2 학내 시설별·상황별 관리

- (강의실) 학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해제 하거나 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
- (기숙사) 개인 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 손이 자주 닿는 표면(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 등을 대상으로 소독
- (교내 식당) 시설·기구 청소·소독, 식사시간 주기적 환기, 식사 전 손 소독 등 식사지도,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급식 위생관리 철저  
\* 급식종사자의 확진자 권고 격리 기간 준수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
- (학교 행사)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외에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참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중대본) >**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밀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상기 사항은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9판)」,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 참고

### Ⅲ 상황 발생 시 관리

#### 1 유증상자 발생 시

- (대학)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KF80 이상) 마스크 착용 후**,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증상자에게 배포 및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학내 구성원)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의료기관 방문 또는 자가검사\*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등에서 방문 검사 실시

#### 2 확진자 발생 시

- (대학) 집단시설에서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표준주의, 비밀주의 상황방역 시행 및 시설 방역 강화**(확진자 위험도별 노출자 분리 및 환경 소독\* 등)  
\* 손이 자주 닿는 표면(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 등을 대상으로 소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판, p.7 참고
- 확진(본인 또는 동거인)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유증상에 따른 검사·진료자 등 포함)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확진 또는 검사·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확진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근거)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 마스크(또는 이와 동급) 상시 착용 권고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발췌(23.8.23.)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구분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시(2급→4급, 8.31.)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 현행 유지
병상	▶ 지정병상 운영	▶ 현행 유지
치료제	▶ 무상공급	▶ 현행 유지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현행 유지
입원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지원 종료
검사비	▶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 의료기관 PCR-RAT 건보지원 (유증상자)	▶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유지 * (보건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 RAT,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 RAT)
재택/외래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 재택치료 지원 종료
감사통계	▶ 전수 감시	▶ 양성자 감시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 현행 유지

□ 위기 단계 하향(경계→주의)

구분	현행(2급→4급, 8.31일 이후)	위기 단계 하향시(경계→주의)
검사비	▶ 우선순위 PCR 무상지원 ▶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 RAT,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 RAT)	▶ 우선순위 PCR 무상지원 종료 ▶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 RAT) * 먹는치료제 처방군 외래 RAT 건보 지원 종료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 운영	▶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 방대본(질병청) 체계